



인천광역시의회산업위원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수신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의사담당관

제 목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협조의뢰

1.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김영분(대표발의)·김정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2.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의견제출 서식에 의거 2012.1.16(월)일까지 제출하고, 동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 목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11. 12. 27 ~ 2012. 1. 16(21일간)
다. 방 법 : 관련기관 및 단체 통지
라.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의회산업위원회위원장

★실무관 최영호 심의관 박충흠 전문위원 김복기 위원장 전용철

협조자

시행 산업전문위원-1892 (2011.12.26.) 접수 (2011. 12. .)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http://www.incheon.go.kr>
전화 440-6235 /전송 440-8765 / sooho2962@korea.kr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조례 제5030호(2011. 11. 17)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포상금 지급에 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안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포상금 지급)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제26조(포상금 지급)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 련 자 료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 (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처분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사용료 제도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1건당 1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